

# ◇ 特許法 · 實用新案法 · 意匠法 · 商標法에 의한

## 特許料와 手數料의 徵收規程 ◇

大統領令 第8561號로 5月 4日 公布 施行된 特許法 · 實用新案法 · 意匠法 ·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와 手數料의 徵收規程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特許料)** 特許法 제 76조의 規定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特許權 存續期間의 起算日로부터의 年數	金額
제 1년 내지 제 3년 매 년	3,000원
제 4년 내지 제 6년 매 년	4,000원
제 7년 내지 제 9년 매 년	9,000원
제 10년 내지 제 12년 매 년	18,000원

**제 2 조 (實用新案登錄料)** 實用新案법 제 23조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는 다음과 같다.

實用新案등록권 存속기간의 起算일로부터의 연수	금액
제 1년 내지 제 3년 매 년	2,000원
제 4년 내지 제 6년 매 년	4,000원
제 7년 내지 제 9년 매 년	8,000원
제 10년	16,000원

**제 3 조 (意匠 및 類似意匠 登錄料)** 의장법 제 42조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는 다음과 같다.

意匠登錄權 또는 類似意匠登錄權 存속기간의 起算일로부터의 연수	금액
제 1년 내지 제 3년 매 년	2,000원
제 4년 내지 제 6년 매 년	4,000원
제 7년 및 제 8년 매 년	8,000원

**제 4 조 (標商, 營業標, 業務標章, 聯合商標 및 指定商品 追加登錄料)** 商標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등

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3호의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 · 指定營業 또는 指定業務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每商品 營業 또는 업무마다 1,000원씩을 加算한다.

1. 상표 영업표 또는 업무표장 매건 30,000원
2. 연합상표 연합영업표 또는 연합업무표장 매건 30,000원
3. 指定商品追加 · 指定營業追加 또는 指定業務追加 매건 30,000원

**제 5 조 (기타 登錄料)**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 영업표 · 업무표장 · 연합상표 · 연합영업표 또는 연합업무표장에 관한 기타 登錄料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권 · 실용신안등록권 · 의장등록권 · 상표등록권 · 영업표등록권 · 업무표장등록권 · 연합상표등록권 · 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권의 이전등록
  - 가. 相續에 의한 경우 매건 1,500원
  - 나. 상속 이외의 事由에 의한 경우
    - 특 허 권 매건 7,500원
    - 실용신안등록권 매건 4,500원
    - 의 장 등 록 권 매건 4,500원
    - 상표등록권 · 영업표등록권 · 업무표장등록권 · 연합상표등록권 · 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권 매건 15,000원
2. 實施權 및 通常使用權의 設定 또는 保全登錄
  - 특 허 권 매건 4,000원
  - 실용신안등록권 매건 4,000원
  - 의 장 등 록 권 매건 4,000원
  - 상표등록권 · 영업표등록권 · 업무표장등록권 · 연합상표등록권 · 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권 매건 4,000원
3. 특허권 · 실용신안등록권 · 의장등록권 · 상표등록권 · 영업표등록권 · 업무표장등록권 · 연합상표등록권 · 연합영업표등록권 · 연합업무표장등록권 및 등

실시권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설정등록 債券金額의 1,000분의5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移轉등록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600원  
상속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1,000원
5. 상표등록권·영업표등록권·업무표장등록권·연  
합상표등록권·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  
표장등록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매건 40,000원
6. 등록사항의 訂正·變更·取消·抹消 또는 回復登  
錄 매건 600원
7. 假登錄 매건 1,000원
8. 在外者의 特許管理人 選任 또는 그 變更登錄  
매건 1,000원

**제 6 조 (手數料)**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  
등록출원·유사의장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의 변경  
출원, 상표·영업표·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영업  
표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지정상품·지정  
영업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상표·영업표·  
업무표장 또는 연합상표의 변경등록출원 및 기타 청  
구 또는 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1. 原出願

가. 특허출원

- 1) 基本審査料 매건 10,000원  
2) 방식심사료 매건 2,000원  
3) 부 가 료

出願明細書(圖面을 包含한다)가 20면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  
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

- 1) 基本審査料 매건 8,000원  
2) 方式審査料 매건 2,000원  
3) 부 가 료

출원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  
다.

다. 의장등록출원·유사의장등록출원 또는 동 출  
원변경출원

- 1) 기본심사료 매건 6,000원  
2) 방식심사료 매건 2,000원  
3) 부 가 료

출원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  
다.

라. 상표·영업표·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영업표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또는 동 출원변경  
출원

- 1) 기본심사료 매건 6,000원  
2) 방식심사료 매건 2,000원  
3) 부 가 료

지정상품·指定營業 또는 指定業務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每商品·영업 또는  
업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다.

2. 상표등록권·영업표등록권·업무표장등록권·연  
합상표등록권·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  
표장등록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가. 기본심사료 매건 6,000원  
나. 방식심사료 매건 2,000원  
다. 부 가 료

지정상품·지정영업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每商品·영업 또는  
업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다.

3. 지정상품·지정영업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  
원

- 가. 기본심사료 매건 6,000원  
나. 방식심사료 매건 2,000원  
다. 부 가 료

지정상품·지정영업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每商品·영업 또는  
업무마다 1,000원씩을 가산한다.

4. 審判請求

- 가. 權利範圍確認審判 매건 4,000원  
나. 無効審判 매건 4,000원  
다. 取消審判 매건 4,000원  
라. 再審請求 매건 5,000원  
마. 通常實施權許與審判 매건 4,000원  
바. 訂正許可審判 매건 4,000원  
사. 分割許可審判 매건 4,000원  
아. 訂正·分割許可의 無効審判 매건 4,000원  
자. 取消處分申請 또는 通常實施權許與處分申請 매건 7,000원

5. 抗告審判請求

- 가. 權利範圍確認審判 매건 5,000원  
나. 無効審判 매건 5,000원  
다. 取消審判 매건 5,000원  
라. 出願의 拒絶査定不服審判 매건 5,000원  
마. 再審請求 매건 5,000원  
바. 通常實施權許與審判 매건 5,000원  
사. 訂正許可審判 매건 5,000원  
아. 分割許可審判 매건 5,000원  
자. 訂正·分割許可의 無効審判 매건 5,000원  
차. 即時抗告 매건 5,000원

6. 審査 또는 審判에 대한 異議申請 매건 500원

(3) 工業化 혹은 擴大研究에 이르지 못하거나 數年以內에 到達이 豫見되지 않는것.

(4) 권리를 取得해도 타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明白한 것.

④ 審初請求는 查定の 理由가 不當하다고 判斷되고 또 公업화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의 重要部分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들의 기술에 관계하고 있는 경우에 局限한다.

⑤ 年金納付는 1~6年度는 모두 납부하고 7~10년도는 납부하지 않는 基準을 設定하며 11~15년도는 납부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處理한다.

⑥ 외국출원은 선행기술을 충분히 조사하여 有效한 특허로서 登錄可能性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발명만을 출원한다.

(1) 輸出하는 제품 또는 기술의 重要부분을 보호하는 것.

(2) 讓渡 또는 實施許諾에 따라 代價를 받음만한 것.

(3) 타사와의 계약에 관련하여 필요한 것.

(4) 客觀적으로 劃期的인 것.

### 9. 特許情報管理

特許管理는 情報管理에 重點을 두고 縱의 分擔方式과 調査機能을 連結하는 形態로서 對處하며 社內分類에 의거한 特許沙錄誌를 發行하여 精報傳達과 蒐集의 基礎資料로 삼고 있다.

外國精報의 入手와 利用을 圖謀하기 위해 CPI에 加入하여 필요한 분야의 情報를 購入하는 한편 IFI에도 가입하여 化學分野의 情報檢索을 可能케한다.

### 10. 商標管理

纖維製品, 樹脂商品 등을 販賣하는 기업으로서는 商標管理體制를 整備하여 販賣戰略에의 支援體制로 굳히고 現行 商標法에 따른 使用主義의 強化에 對應하는 社內 商標管理體制의 정비강화에 力點을 두고 있다.

### 11. 將來計劃

특허관리체제와 특허정보관리체제의 충실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27面에서 계속—

7. 審判·抗告審判請求·再審請求에 의한 參加申請 매건 3,500원, 8. 出願人名義變更申請 매건 1,000원

#### 9. 補正書 제출

출원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의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면마다 1,000원

10. 期間懈怠免除申請 매건 2,500원

11. 出願公告猶豫 또는 意匠秘密保障의 請求

매건 5,000원, 12. 指定期間延長申請 매건 500원

13. 費用額決定의 請求 매건 300원

14. 執行文 正本의 請求 매건 150원

15.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유사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영업표등록증·업무표장등록증·연합상표등록증·연합영업표등록증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再交付申請이나 그 寫本의 交付申請 매건 300원

16. 각종 證明의 신청 매건 150원

17. 書類의 謄本, 抄本, 寫本의 교부신청 매1면 100원

18. 公報 또는 도서의 複寫申請 매1면 50원

19. 公報 또는 도서 이외의 서류의 閱覽申請 매건1회 100원

제7조 (納付方法) ①원출원료, 상표등록권·영업표등록권·업무표장등록권·연합상표등록권·연합영업표등록권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권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료 및 지정상품·지정영업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료는 기본심사료와 부가료를 합산 납부하고, 방식심사료는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등록사정 통지일로부터 6월내에 최초 3년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특허료 또는 실용신안등록료는 6월내에, 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3월내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 3년분에 대한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법 제77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9조 또는 의장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은 拋棄한 것으로 본다.

⑤특허권자·실용신안등록권자 또는 의장등록권자는 4년분 이후부터는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를 매년 1년분씩 그 전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이 영 시행후까지 存續하는 특허료는 매년 72,000원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영 施行당시 이미 납부된 特許料·登錄料 및 手數料는 終前의 규정에 의한다.